#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장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58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8.

발 의 자:이장섭·송갑석·양정숙

김원이 • 인재근 • 이동주

김주영 · 김영호 · 김경만

임호선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,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를 75세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의료지원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,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약제비용 지원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진 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참전유공자 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7조).

법률 제 호

##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"을 "진료를 받거나,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(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말한다)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(이하 "진료비용 등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"를 "참전유공자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진료비용"을 "진료비용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"진료비 지원의 방법"을 "진료비용 등의 지원 방법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약제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발생하는 약제비용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의료지원) ① 참전유공자가	제7조(의료지원) ①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	
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(「한국보	
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	
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)에	
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	진료를 받거나, 해당 의료기
<u>비용</u> 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	관에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
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	따라 약국(「약사법」 제20조에
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	따라 등록된 약국을 말한다)에
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	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발
부담한다.	생하는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
	(이하 "진료비용 등"이라 한다)-
② 국가는 75세 이상인 참전유	② <u>참전유공자</u>
<u>공자</u> 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	
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	
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	
하여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	<u>진료비용 등</u>
<u>진료비용</u> 은 본인이 부담하게	

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	
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	
부담한다.	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	3
또는 <u>진료비 지원의 방법</u> ·절차·	진료비용 등의 지원 방법
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	
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